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41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이달희・김대식・김예지
김상훈・김종양・서천호
박형수・최보윤・박충권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하여야”를 “20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발전종합계획의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 사회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 ---------- ---------- ---------- -20년마다 수립하여야-----.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발전종합계획의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 사회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